

의안번호	2208598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5.4.25.
추계번호	25D12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보훈병원 진료비와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률을 90%로 확대하며 위탁병원 진료지원 대상자 연령을 65세로 하향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968억 6,500만원(연평균 393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상금 수급권 확대	30,326	31,732	33,200	34,738	36,340	166,336	33,267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	4,180	4,420	4,673	4,941	5,224	23,438	4,688
위탁병원 진료 지원 확대	1,167	1,282	1,408	1,543	1,691	7,091	1,418
합계	35,673	37,434	39,281	41,222	43,255	196,865	39,3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2항 (보상금)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의무규정
2	안 제17조제5항 (의료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7조제6항 (의료지원) 위탁병원 진료대상 연령 낮춤	제5항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4	안 제26조(국내 정착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2항 (보상금)	○	—
2	안 제17조제5항 (의료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확대	○	—
3	안 제17조제6항 (의료지원) 위탁병원 진료대상 연령 낮춤	○	—
4	안 제26조(국내 정착지원에 관한 특례)	×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규모 및 보호·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등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구분 및 제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추계에서는 현재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 중 보상금 지급권이 없는 손자녀 수에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단가 증가율을 적용함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보훈병원)과 감면대상 연령(위탁병원)을 확대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율 현황

감면대상	보훈병원	위탁병원
독립유공자	전액지원	전액지원(비급여는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해당)
독립유공자 유가족	60%	60%(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1명 한정)

자료: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 진료의 경우, 진료비 감면비율을 60%에서 90%로 확대, 지원대상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하는데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 보상금 지급권 제한 단서규정 삭제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추가재정소요 요인을 고려함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상금 지급권 확대(안 제12조제2항)

- 현행법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권 구분 및 제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보
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945년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최초 등록 당시 독립
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하여 보상금 수급권자였을 경우 손자녀는 보상금 수
급권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경우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

- (지급대상)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 확대 대상자 수는 1945년 8
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 중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1,390명으로, 추계기간 대상자 수는 1,390명으로 유지되는 것으
로 가정

[표 3] 1945.8.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은 인원(2024.12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훈장			포장	표창
		1~3등급	4등급	5등급		
인 원	1,390	89	175	634	94	398

자료: 국가보훈부

- (지급단가) 2024년 지급단가에 2020~2024년 연평균 증감률 4.6%를
적용하여 산출
- (추계결과) 보상금 수급권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663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권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지급대상 (명, a)	합계	1,390	1,390	1,390	1,390	1,390	-
	건국훈장1~3등급	89	89	89	89	89	-
	건국훈장4등급	175	175	175	175	175	-
	건국훈장5등급	634	634	634	634	634	-
	건국포장	94	94	94	94	94	-
	대통령표창	398	398	398	398	398	-
월 지급단가	건국훈장1~3등급	3,017	3,156	3,302	3,455	3,615	-
	건국훈장4등급	2,514	2,630	2,752	2,879	3,012	-

(천원, b)	건국훈장5등급	2,042	2,137	2,236	2,340	2,448	-
	건국포장	1,456	1,523	1,593	1,666	1,743	-
	대통령표창	973	1,018	1,065	1,114	1,165	-
추가 재정소요 (백만원, a×b×1 2)	합계	30,326	31,732	33,200	34,738	36,340	166,336
	건국훈장1~3등급	3,222	3,371	3,527	3,690	3,861	17,671
	건국훈장4등급	5,279	5,523	5,779	6,046	6,325	28,952
	건국훈장5등급	15,536	16,258	17,011	17,803	18,624	85,232
	건국포장	1,642	1,718	1,797	1,879	1,966	9,002
	대통령표창	4,647	4,862	5,086	5,320	5,564	25,47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확대(안 제17조제5항)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감면진료(60%) 대상 인원에 진료단가 차액과 수진횟수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진료인원) 2024년 기준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자 87,339명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0.02%)¹⁾과 보훈의료 수혜율(25.2%)²⁾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감면진료 실인원을 추정함

[표 5]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 인원: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 대상인원	87,381	87,402	87,423	87,444	87,466
보훈의료 수혜율	25.2%	25.2%	25.2%	25.2%	25.2%
감면진료 실인원	22,020	22,025	22,031	22,036	22,041

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진료(60%) 대상자만 표시한 수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 2023년 결산기준 보훈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67,249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5.71%)³⁾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감면진료비 단가를 추정함

1)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자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인원	1,306,970	1,309,021	1,305,069	1,304,985	1,308,232	0.02%

주: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등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임

2) 보훈의료수혜율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보훈의료 수혜율	24.3%	24.6%	25.3%	25.5%	26.3%	25.2%

3) 보훈병원 감면진료비(60%) 단가: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감면진료비 단가	53,864	62,974	64,394	66,795	67,249	5.71%

[표 6] 보훈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60% 감면단가	79,428	83,960	88,750	93,814	99,166
90% 감면단가	119,143	125,940	133,125	140,721	148,749
단가차액	39,714	41,980	44,375	46,907	49,583

주: 90% 감면단가는 60% 감면단가에 1.5를 곱하여 산출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34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보훈병원 진료감면 확대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 훈 병 원	진료 인원(a, 명)	22,020	22,025	22,031	22,036	22,041	—
	수진횟수(b, 회)	4.78	4.78	4.78	4.78	4.78	—
	진료비 60%감면단가(c, 원)	79,428	83,960	88,750	93,814	99,166	—
	90%감면단가(d, 원)	119,143	125,940	133,125	140,721	148,749	—
	단가차액(e=d-c, 원)	39,714	41,980	44,375	46,907	49,583	—
	추가재정소요 (f=a×b×e, 백만원)	4,180	4,420	4,673	4,941	5,224	23,438

주: 수진횟수는 현재 진료비의 90%를 감면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진횟수⁴⁾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하향 및 감면을 확대(안 제17조제5항 및 제 6항)

-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경우, 지원대상별로 구분하여 대상 연령의 하향 및 감면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1) 기존 지원대상에게 진료비 감면을 확대(60%→90%)

- 현재 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진료비의 90%로 감면을 확대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지원대상) 2024년 기준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원

4) 참전유공자(90% 감면진료) 수진횟수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수진횟수	3.5	3.6	5.1	5.3	6.4	4.78

3,847명에 최근 3년 평균 증감율 -0.09%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지원
대상을 산정

[표 8] 기존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인원: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 대상인원	3,840	3,837	3,833	3,830	3,8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 2023년 기준, 위탁병원 90% 감면 진료단가 33,369원과
60% 감면 진료단가 22,756원에 각 진료단가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
율 7.7%와 3.8%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진료단가를 산정한 후, 90%
감면 진료단가와 60% 감면 진료단가 간의 단가차액을 산정

[표 9]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차액: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60% 감면단가	25,451	26,418	27,422	28,464	29,546
90% 감면단가	41,685	44,895	48,352	52,075	56,085
단가차액	16,234	18,477	20,930	23,611	26,5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현재 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진료비의 90%로 감면을 확
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8억 7,900만원
으로 추계됨

[표 10] 기존 지원 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진료 인원(a, 명)	3,840	3,837	3,833	3,830	3,826	-
수진횟수(b, 회)	7.1	7.1	7.1	7.1	7.1	-
단가차액(c, 원)	16,234	18,477	20,930	23,611	26,539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443	503	570	642	721	2,879

주: 수진횟수는 위탁병원 90% 감면대상자 2023년 수진 횟수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 보상금 수급자(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 진료지원 확대

-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진료비 90%를 감면해주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신규 지원대상 됨
 - 2024년 기준 63세 이상 73세 미만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207명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최근 3년 연평균증감률 -0.09%를 적용

[표 11] 기 보상금 수급자 중 신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인원: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 대상인원	1,205	1,204	1,203	1,202	1,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 2023년 기준, 위탁병원 90% 감면 진료단가 33,369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7.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진료단가를 산정

[표 12] 위탁병원 90% 감면진료비 단가: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90% 감면단가	41,685	44,895	48,352	52,075	56,0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 75세 미만 선순위 유족에게 위탁병원 진료비를 90% 감면해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0억 7,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기 보상금 수급자(65세 이상 75세 미만) 진료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진료 인원(a, 명)	1,205	1,204	1,203	1,202	1,200	—
수진횟수(b, 회)	7.1	7.1	7.1	7.1	7.1	—
진료단가(c, 원)	41,685	44,895	48,352	52,075	56,085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357	384	413	444	478	2,076

주: 수진횟수는 위탁병원 90% 감면대상자 2023년 수진 횟수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제한 규정 삭제에 따른 신규 보상금 수급자에게 진료비 90% 감면

- 개정안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삭제에 따라 신규 보상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가족에게 위탁병원 진료비 90%를 감면해주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지원대상)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 중보상금 미수급자 1,390명 중 65세 이상인 경우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신규 지원대상 됨
 - 2026년 기준 65세 이상 보상금 미수급 선순위 손자녀 수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최근 3년 연평균증감률 -0.09%를 적용

[표 14] 손자녀 보상금 수급권 제한 규정 삭제에 따른 신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인원: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 대상인원	1,239	1,238	1,237	1,236	1,2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단가) 2023년 기준, 위탁병원 90% 감면 진료단가 33,369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7.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진료단가를 산정

[표 15] 위탁병원 90% 감면진료비 단가: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90% 감면단가	41,685	44,895	48,352	52,075	56,0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보상금 미수급 선순위 손자녀에게 위탁병원 진료비를 90% 감면해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1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신규 보상금 수급자에 대한 진료감면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진료 인원(a, 명)	1,239	1,238	1,237	1,236	1,235	—
수진횟수(b, 회)	7.1	7.1	7.1	7.1	7.1	—
진료단가(c, 원)	41,685	44,895	48,352	52,075	56,085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367	395	425	457	492	2,136

주: 수진횟수는 위탁병원 90% 감면대상자 2023년 수진 횟수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위탁병원 진료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위탁병원 진료지원 대상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인하하고 진료비의 90%를 감면해 줄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0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7] 위탁병원 진료감면 확대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존 지원 대상자	443	503	570	642	721	2,879
기 보상금 수급자(65세~75세)	357	384	413	444	478	2,076
신규 보상금 수급자	367	395	425	457	492	2,136
합계	1,167	1,282	1,408	1,543	1,691	7,091

주: 수진횟수는 위탁병원 90% 감면대상자 2023년 수진 횟수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보훈병원 진료비와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률을 90%로 확대하며 위탁병원 진료지원 대상자 연령을 65세로 하향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968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상금 수급권 확대	30,326	31,732	33,200	34,738	36,340	166,336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확대	4,180	4,420	4,673	4,941	5,224	23,438
위탁병원 진료 지원 확대	1,167	1,282	1,408	1,543	1,691	7,091
합계	35,673	37,434	39,281	41,222	43,255	196,865

주: 수진횟수는 위탁병원 90% 감면대상자 2023년 수진 횟수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